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의 건 서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구미시 원평동 52-4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별표8 나목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시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인근의 재래시장과 구미역세권 등과 중복투자의 부작용과 상업시설의 공동화·슬럼화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제정 주체인 구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토록 의결하였다.

- 다 음 -

-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간 및 지역내의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또한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용 주요기능으로 하는 지역으로 구미시 관내 타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민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중 별표8 나목의 주거용 부분면적을 획일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시행하되, 청원지역 인근의 재래시장과 구미역세권 등을 감안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주거용 부분면적을 10분의 9이하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4. 12. .

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